

선	기관의 장
람	



제 619 호

2005년 2월 22일 화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52호(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53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54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 7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55호(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1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56호(인천광역시남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1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57호(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19

회								
람								

조	례
---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52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1인을”을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 위원은 앞에 “위원중 세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를 삭제 한다.

제8조 제1항 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재직기간에”를 “해당직위 재직기간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 구성의 감사선출조항 삭제(안 제5조 제3항)
- 위원 구성시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여 객관성 확보(안 제5조 제4항)
- 위원의 임기를 연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전문성 확보(안 제8조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소식지발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53 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격월로”를 “매월 1회”로 하고, “발간월을 변경할 수 있다.”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격월로 1회이상”을 “매월 1회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안이유

- 남동구 구정소식지인 『남동마당』의 발간주기를 격월에서 매월로 변경하여 구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구정 추진사항을 전파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마당을 매월 발간하여 구정추진사항을 신속하게 구민에게 알림 (안 제2조)
- 위원회 회의를 매월 1회이상 개최하여 남동마당 발간을 원활토록 함 (안 제8조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54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출장공무원이”를 “출장공무원은 당일 근무시간내 귀청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당일 업무추진 사항과 특이사항에 대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일일보고를 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를 “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15조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구청장의 명령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상근무를 위해 출근한 직원이 다음 정상근무일 또는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통비 등 실비를 2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1. 산불 진화를 위한 비상근무
2. 설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복구를 위한 비상근무
3. 재해발생 및 전염병으로 인한 비상 방역을 위한 근무
4. 대집행

④ 제3항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의2 중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로 한다.

동조 제1항 중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동조 제2항 중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의”를 “휴무제의”로 한다

제1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 제3항과 제4항은 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 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을 폐지한다.

□ 제안이유

- 출장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추가하여 출장지에서의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토요일 휴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휴무토요일, 공휴일에 비상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직원에 대하여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고자 함
- 연가에 대한 복무규정을 구체화하여 공무원의 계획적인 연가 신청 및 허가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장공무원이 당일 근무시간내 귀청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일일보고 의무 및 방법을 정함 (안 제8조 제3항)
-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구청장의 명령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위해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교통비 등 실비를 20,000원까지 지급하는 범위를 정함.(안 제15조 제3항)
-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1항, 제13 제1항)
- 당해연도에 병가를 얻지 않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은 다음해 연가일수를 각각 1일을 가산 조항 신설 (안 제18조 제3항)
-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는 조항 신설(안 제19조 제3항)
-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는 조항 신설(안 제20조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55 호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4의 폐기물봉투의 규격· 용도 및 가격을 별지과 같이 한다.

별표5의 봉투모형도 중 2ℓ 음식물전용봉투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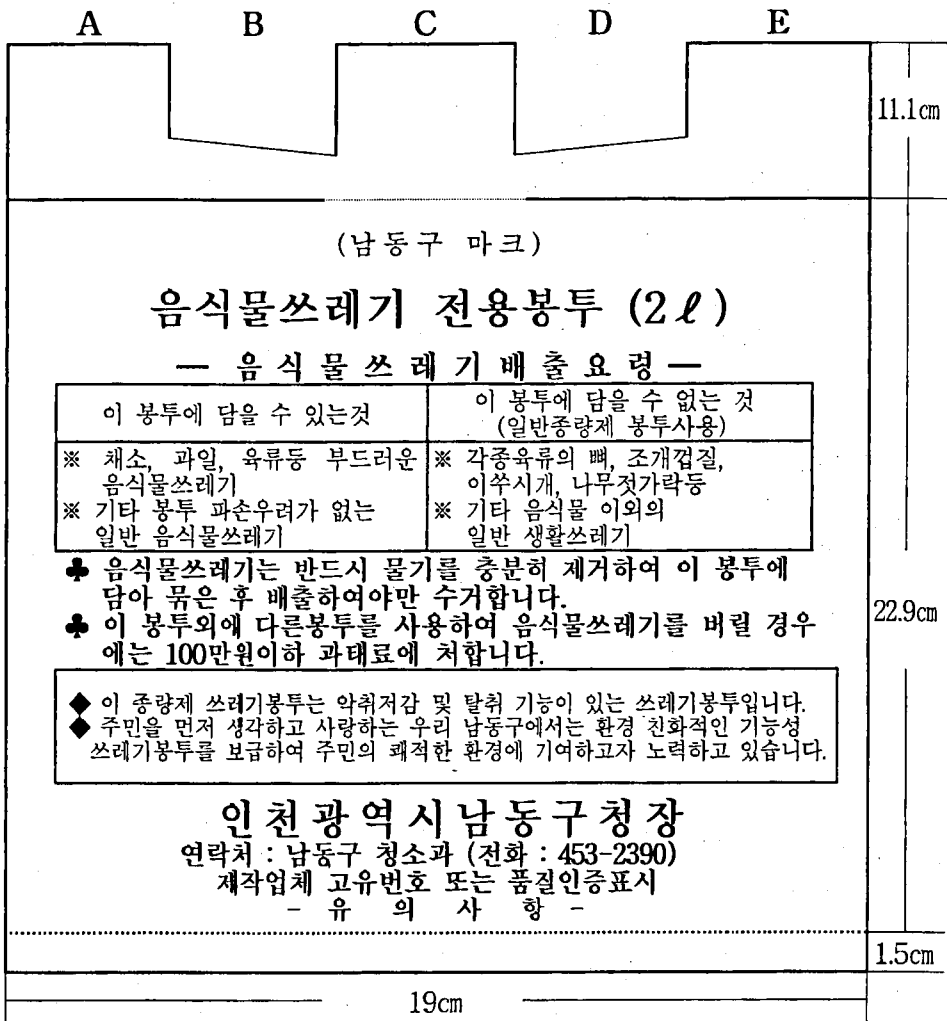
폐기물봉투의 규격·용도 및 가격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가격 (원)	용도
2	19×22.9	70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3	22×26	90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일반봉투
5	26×31	160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일반봉투
10	33×40	310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일반봉투
20	41×49	620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일반봉투
50	56×67	1,540	공공용봉투, 일반봉투
100	71×85	3,070	공공용봉투, 일반봉투
30 (12kg)	48×57	2,350	가정사업계용 봉투
60 (24kg)	60×69	4,700	가정사업계용 봉투
125 (50kg)	80×90	7,870	가정사업계용 봉투

(별표5)

봉 투 모 형 도 (신설)

□ 음식물전용봉투 2ℓ



고) 1. (A:B:C:D:E비율 = 1:1.5:1:1.5:1)

2. 봉투의 인쇄문안 크기는 전체규격에 80% 이상으로 한다.

3.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청색바탕에 진한청색글씨로 한다.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제10조제3항 별표4에서 정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최소 규격을 3리터 미만으로 제작하여 소량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인 경우 장기간 보관함에 따른 악취발생 등 사용불편과 봉투사용을 저감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폐기물봉투의 규격·용도 및 가격을 최소 3리터에서 2리터 규격으로 세분화하고 용도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지정함. (제10조제3항 별표4)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5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남동구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전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

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안전관리자문단의기능 (안 제2조)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자문단장과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자문단의 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자문단의 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5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

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기타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고 규정 외 기타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방재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문화홍보실장, 경영재정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재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제안이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되는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기금의 운용수입,기타 잡수입 등 기금의 조성 관련 규정 (안 제2조)
-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 (안 제3조)
- 기금의 용도 (안 제6조)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등 안전시설설치
 -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및 재난관련 장비 구입
 - 기타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구청장 소속하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안 제10조)

